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전기사업법」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, 해당 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함(안 제3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